



산업체위탁교육 학사·학적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2-4-15
제정일자	2015. 12. 11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와 본 대학 학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 근무자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학사·학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 (산업체위탁교육생에 대한 학사·학적관리) ① 산업체위탁교육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대학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의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② 산업체위탁교육생의 학생신분과 자격 등은 정규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여한다.

③ 산업체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,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(협약)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다. <2016.12.6. 개정>

④ 산업체위탁교육생이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 절차 없이 제적처리 할 수 있다.

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(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)하여 동종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본 대학 “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” 심의를 거쳐 제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하여 질병 및 사고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 해야 하는 경우 퇴직증명서 및 의사의 진단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며,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. 단,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질병으로 재취업이 불가능 할 경우, 원칙적으로 제적이 불가피하나 본 대학의 총장이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업이수정도, 질병의 종류, 의사의 진단서,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1.8.20., 2023. 3. 30., 2024.3.20.>

⑦ 산업체위탁교육생은 매년 9월(연1회) 재직증명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 중 1종의 공적 보험 가입확인서)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이직을 했을 경우 퇴직증명서 및 산업체위탁 교육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, 공적 보험 확인서 외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8.20., 2023. 3. 30., 2024.3.20.>

⑧ <2016.12.6. 삭제>

⑧ 복학 및 재입학은 복학 및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없다. <2016.12.6. 개정>

제3조(위탁생의 교과목 이수·학점인정) ① 산업체위탁교육생의 교과목 이수는 학칙에 의한 졸업학점을 기준으로 하며,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별도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본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중 선행학습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자세한 사항은 선행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(지도비) 산업체위탁교육 운영 학과의 책임교수에게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)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운영지침과 본 대학 학칙·학사 내규 및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결

과에 따른다. <2019.11.14. 개정>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